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나목,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서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1. 우편요금 감액대상

가. 감액대상 우편물

1)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으로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고,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

나. 감액제외대상 우편물

1)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우편물

※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직접 배달할 우체국

2)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3) 우편집중국

나.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 (기본감액 대상) 요금별납우편물 100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50통 이상

2) (구분감액 대상)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다. 기본 및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물에는 본지 또는 부록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을 첨부 하거나 제본할 수 있다.

가) 간단한 인사말 등은 본지에 직접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본지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인쇄된 간략한 안내서 또는 소개서,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을 제본하지 않고 동봉할 경우에는 각각 1매에 한하며,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없다.

나) 부록은 본지의 부록임을 알 수 있도록 본지 및 부록의 표지에 '부록'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부록임을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다.)

다) 부록은 본지와 별도로 발송할 때는 감액을 받을 수 없다.

2)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4)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우편번호 구분

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우편물은 용기(접수용상자, 우편자루, 종이상자, 파렛트(pallet) 등)에, 규격외우편물은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종이상자, 파렛트(pallet)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1개의 묶음 또는 용기(접수용상자, 우편자루,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용상자 접수는 상자별 80% 미만은 별도 표시하여 접수국에 제출할 수 있다.

6) 우편물 제출형태

가) 묶음 제출(규격외 우편물)

(1) 묶음 1개의 두께는 2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묶음을 보낼 때의 자투리 우편물과 10통 묶음이 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

(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3)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한다.

나) 접수용 상자 접수(규격 우편물)

(1)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공하는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수용상자에는 우편집중국별 또는 배달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접수용 상자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각 접수용 상자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3자리, 6자리)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상자 윗면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우편자루 제출

(1) 우편물이 취급 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묶은 후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

(2) 우편자루 1개의 무게는 최소 6㎏ 이상 최대20㎏(우편자루 무게 포함) 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우편자루를 보낼 경우 자투리 우편자루와 1개 우편

자루에 우편물수가 1,000통 이상일 때는 6㎏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각 우편자루에는 행선지별 우편번호·접수국명을 기재한 국명표를 끼워야 한다.

라) 종이상자(BOX) 제출

(1)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상자는 골판지 등을 재질로 사용하여 우편물이 운반과정에서 흐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크기, 재질 등이 동일한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파렛트(pallet)(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트(pallet)) 제출

(1) 파렛트(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1파렛트(pallet)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파렛트(pallet) 높이 기준)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별 파렛트(pallet) 적재'에 의한 구분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용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2) 파렛트(pallet)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우편번호순(규격우편물) 또는 도착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sorting plan 순)(규격 우편물), 집중국(시,구,동)별(규격외 우편물)로 정렬하되, 구분·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간지(종이 등)를 삽입(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음 처리 후 적재하여야 한다.

(3) 각 파렛트(pallet)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3자리, 6자리)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중량이 다른 우편물도 함께 적재할 수 있다.

(5) 우편물을 파렛트(pallet) 제출 시에는 파렛트(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한다.

바) 접수목록표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 정도, 묶음 및 용기(우편자루, 상자, 파렛트(pallet))수,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우편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피 요구

(1) 접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우편법 제27조에 의거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 받을 수 있으며,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1) 우편집중국

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bar code) 인쇄

(1)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bar code) 인쇄)’ 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률 정도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한다.

(2)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bar code) 인쇄’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3) 1회성으로 발송하는 우편번호 바코드(bar code)인쇄우편물 중 사전 고객 전산자료(DB)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률을 검사하여 감액률을 적용한다.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우편집중국별 파렛트(pallet) 적재

(1) 1개의 파렛트(pallet)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하여야 한다.

(2) 동일 발송인은 중량과 규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우편물을 동일 파렛트(pallet)에 적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우편물 종류별 접수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상자)에 담아 파렛트(pallet) 적재할 경우에는 ‘2. 다. 6). 우편물 제출형태’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기타 제출 방법은 우편물 제출 형태의 파렛트(pallet)제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 순로구분기별 또는 집배원별 접수

(1) 우편번호 앞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을 전제로 하여 순로구분기가 설치된 관서는 호기별로, 1대 또는 미설치 관서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순로구분기 설치 관서 현행자료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라) 상자접수 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 다, 6), 나)’, ‘2. 다. 6), 라)’ 항과 같음

마) 집중국(시,구,동)별 적재 접수

(1) 규격외 우편물은 파렛트(pallet)에 적재시 집중국별로 적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집중국 관할지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2) 규격외 우편물 제출은 ‘2. 라. 6), 가)’ 항과 같음

2) 직접 배달국

가)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상자 제출 형태의 방법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1), 2)’ 항 해당 우편물은 요금감액요건 ‘2. 나. 다.’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기본 감액률 : 일반우편요금의 50%

나. 구분 감액률(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

구분	우편물 접수내역		접수국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95% 이상)	집중국별 파렛트(pallet) 적재	규격우편물		규격외우편물		최고
						순로구분 기별 또는 집배원별	상자접수	집배원별	집중국별 (시,구,동) 적재접수	
규격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2%	2%	2%		1%			7%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2%			1%			7%
	6자리	우편집중국	2%	2%	2%	3%	1%			10%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2%		3%	1%			10%
	6자리	직접배달국 (자국접수자국배달)	9%				1%			10%
규격외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2%	2%	2%				1%	7%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2%					1%	7%
	6자리	우편집중국	2%	2%	2%			3%	1%	10%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2%				3%	1%	10%
	6자리	직접배달국 (자국접수자국배달)	9%						1%	10%

※ 상자접수 감액률은 접수용 상자, 종이상자, 파렛트(pallet) 접수도 동일하게 적용

1)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bar code) 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 요건

가) 우편물의 크기가 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45호(2011. 9. 30.)는 폐지한다.